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12 발의연월일: 2024. 9. 27.

발 의 자:전진숙·주철현·오세희

윤건영 • 조인철 • 박해철

이기헌 • 박희승 • 강준현

문금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3년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청소년은 독자적인 정책 영역이었으나 행정각부의 명칭에 청소년이 반영된 사례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존속한 체육청소년부가 유일한바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1964년 내무부를 시작으로 청소년 정책 소관 부처가 10여 차례 변경됨에 따라 업무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가 2010년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2024년 기준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 규모가 총예산의 약 13.9%로 가족 관련 사업 예산(총예산의 69.5%)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의 실질 소관 범위를 명칭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여 해당 부처로 하여 금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청소년 정 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6호 및 제4 2조).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여성청소년가족부

제42조의 제목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하고, 같은 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청소년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는 여성청소년가족 부장관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은 여성청소년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여성청소년가족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여성청소년 가족부장관의 행위 또는 여성청소년가족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국무위원 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여성청소년가족부장관)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또는 여성가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청소년가족부, 여성청소년

가족부장관, 여성청소년가족부 소속 공무원 또는 여성청소년가족부

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	제26조(행정각부) ①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16. 여성가족부</u>	16. 여성청소년가족부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	제42조(여성청소년가족부) 여성청
<u>관</u> 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소년가족부장관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